



제300회 서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  
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

# 서산시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▣ 서산시장 제출(의안번호 제517호)

2024. 11.

전문위원	사무국장	결 재	행정문화복지위원장

행정문화복지위원회  
전 문 위 원

# 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제517호
- 제 출 자 : 서산시장
-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14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## 2. 제안이유

- 시민들의 다양해지는 복지 욕구에 맞춰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산 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서산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출연기관 : (재)서산시복지재단
- 출연금 : 724,996천원
- 사업내용
  - 취약계층 지원사업
  - 복지시설 간 연계·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사업
  -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사업
  - 수탁시설 운영

## 4. 출연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
## 5. 검토 의견

- 이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.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서 서산시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- 시민들의 다양해지는 복지 욕구에 맞춰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산 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서산시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